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3/3/20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과 인건비의 범위

| | 개념, 범위 | 관련규정 범위, 해석, 이유 등 (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가이드) |
|---|-------------|---|
| 2 | 조특법 세액공제 등 | 10조(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), 제29조의4(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)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산기준인 경우 |
| (| 인건비의 인정범위 | |
| | 기본급 | 연구전담부서 종사하는 인건비 등의 개념정의 |
| | 상여금 | 연구전담부서 종사하는 인건비 등의 별도지급방법(연차수당도 해당) |
| | 성과금 | 근로자의 경우 근로대가의 일종임 |
| | 이익처분방식의 성과금 | 기여이익 계산후 지급이지만 근로자의 임금으로 간주(2019. 1월부터 인정) |
| | 연구전담요원 | 인건비 모두 해당(연구전담자 아니면 제외) |
| | 4대보험 등 | 회사부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인정(산재보험은 제외) |
| | 근로소득 불인정 | |
| | 퇴직급여 | 조세정책 목적상 제외함(퇴직소득) |
| | 퇴직급여충당비용 | 조세정책 목적상 제외함(퇴직소득) |
| | 연구소장 | 연구전담 직접업무 아님 |
| | 간접요원 | 연구개발 행정관리지원업무자는 해당안됨 |
| | 10% 초과주주 | 연구전담요원이라도 주주 임원 인건비는 제외 |